



「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

헌법 모의고사 및 풀이(4)

| 고영동 교수 |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



* QR코드를 통해
"고영동법"
빠른 학습을 위한
올바른 선택! 헌법
고영동 교수의 강의
일정 확인할 수 있
습니다.

09. 다음 중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 | | |
|-------------|-----------|
| ① 교육의 전문성 | ② 교육재정 |
| ③ 의무교육의 무상성 | ④ 대학의 자율성 |

난이도 : 중 출제영역 : 사회적 기본권

[해설] 정답 : ④

- ① (위임한 사항 O)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② (위임한 사항 O) 헌법 제31조 제6항

- ③ (위임한 사항 X)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

- ④ (위임한 사항 O) 헌법 제31조 제4항

10.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 |
|------------------------|
| ① 국민의 근로의 의무 |
| ②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
| ③ 국민의 헌법준수의 의무 |
| ④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

난이도 : 하 출제영역 : 국민의 기본적 의무

[해설] 정답 : ③

- ① (O), ④ (O) 헌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헌법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② (O) 헌법 제35조 제1항

헌법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X) '국민의 헌법준수의 의무'에 대한 헌법규정은 없다.

11.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 |
|---|
|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탄압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징지도 포함된다. |
| ②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③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난이도 : 중 출제영역 : 정치적 기본권

[해설] 정답 : ④

- ① (O), ② (O) 현재 2008.6.26. 2005헌마1275

- ③ (O) 현재 2007.6.28. 2005헌마1179

- ④ (X)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로 대별할 수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현재 2006.2.23. 2005헌마403).

12. 다음은 청원경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에 대하여도 단체 행동권뿐만 아니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 ③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④ 청원경찰의 정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⑤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난이도 : 상 출제영역 : 종합

[해설] 정답 : ③

틀린 지문은 ⑦과 ⑧ 2개이다.

- ⑦ (X)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경찰은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3권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은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있고, 경비업법은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생의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확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현재 2008.7.31. 2004

헌비9)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⑧ (X) 청원경찰법 제11조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함으로써 청원경찰들이 관리하는 국가 등의 중요시설의 안전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 업무의 특성상 단결권행사나 단체교섭권의 행사만으로도 시설의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보장과 그 업무의 공공성,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에 대하여도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한의 필요성과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 또한 청원경찰법 조항으로 인하여 입는 청원경찰의 불이익에 비하여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의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보장,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갖추었고, 유사한 집단행위 또는 생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비하여 볼 때 과잉법률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원경찰법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현재 2008.7.31. 2004헌비9).

- ⑨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기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하거나 혹은 적어도 청원경찰법상에 마련된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현재 2018.1.25. 2017헌기26).

- ⑩ (O)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임면주체는 국가 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그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바,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하여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인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현재 2010.2.25. 2008헌비160).

- ⑪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흔적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질에 심각한 흔적이 생긴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 수행의 위임을 거두어 들어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행위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고,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청원경찰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입게 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이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11.10.25. 2011헌마85).